

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[2003. 2. 17] 규칙 제1033호

일부개정 2005. 3. 16 규칙 제1071호
(연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전문개정 2008. 6. 25 규칙 제1162호
일부개정 2011. 5. 6 규칙 제1213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3. 1. 10 규칙 제1251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5. 2. 22 규칙 제1309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19. 2. 28 규칙 제1443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9. 3. 4 규칙 제1444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 2023. 7. 13 규칙 제1544호
(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
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)
일부개정 2024. 7. 4 규칙 제1556호
(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2. 28>

제2조(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) ① 연천군 명예군민증서(이하 “명예군민증서”라 한다)의 수여대상자는 담당관·과장·원장·소장, 읍·면장 또는 유관기관·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 <개정 2011. 5. 6, 2013. 1. 10, 2015. 2. 22, 2019. 2. 28, 2019. 3. 4, 2023. 7. 13, 2024. 7. 4>

②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조 삭제 <2019. 2. 28>

제4조(공고)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, 공적내용, 취소사유 등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록유지) 담당부서장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2. 28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5. 6 규칙 제1213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「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각각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⑩ 부터 ⑰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1. 10 규칙 제1251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⑧ 및 ⑨ 생략

부칙 <2015. 2. 22 규칙 제1309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⑥ 「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각각 “안전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⑦ 부터 ⑮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2. 28 규칙 제144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3. 4 규칙 제1444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㉓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실과원소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·원장·소장”으로 한다.

㉔ 생략

부칙 <2023. 7. 13 규칙 제1544호,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
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7. 4 규칙 제1556호,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실장·담당관·과장·원장·소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·원장·소장”으
로 한다.

⑩ 생략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9. 2. 28>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연천군은 명예군민증서 수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직업, 직위, 주소(주택, 사무실), 연락처(주택, 사무실), 학력 및 경력사항, 사진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명예군민증서 수여 기간 동안
4.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연천군의회
2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직업, 직위, 주소(주택, 사무실), 연락처(주택, 사무실), 학력 및 경력사항, 공적사항
3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보고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명예군민증서 수여 기간 동안
5.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

본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연 천 군 수 귀 하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9. 2. 28>

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

일련 번호	성명	생년 월일	학력 및 경력	직업 또는 직위	국 적 (주소)	전화 번호	공적 개요	수 여			취 소		비고
								수 여 연월일	장소	기념품	취 소 연월일 (회수일)	취소 사유	